



안사회계법인 • 829-7575

세 계 재 경 AnSwer

••• 2021/7/19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과와 稅計·經營 戰略

과거 창업시 직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방법과 세금계산

- 창업시 일부 직원에 명의신탁 지분분산하였는데, 10년째에 이직하는 경우임(명의신탁주식 원금 1천만원, 기업경영실적 좋아 현재의 가치평가액이 10배 오른 1억원으로 가정)

개념구분	① 과거 명의신탁증여세	② 현재시점 주식양도로 거래	③ 현재시점 증여로 종결
거래방법	명의신탁하였던 과거시점의 증여로 신고함	과거는 직원 자기불입으로 보고 현재시점 양도로 함	과거 직원불입 불분명하여, 현재 시점의 반환 증여로 함
주식을 실질주주로 환원하기 위한 세금계산 방법	① 10년전 명의신탁 증여세 = 1천만원×10%=100만원 ② 무신고가산세 20% 100만원×20%=20만원 ③ 미납부가산세율(2020년까지는 하루당 10,000분의3 = 1년당 약 11%) 100만원×11%×10년 = 1,100,000원 ①, ②, ③ 세금합계 = 100만원+20만원+110만원=230만원	① 양도소득 : 양도가 1억원 - 취득원가 1천만원 - 250만원 = 87,500,000원 ② 중소기업인 경우 양도세율 10% 적용시 세금 = 8750만원 ×10% = 875만원×1.1 = 962만원 ③ 일반 기업이면 양도세율 20% 세금 : 8750만원×20% ×1.1 = 1925만원	① 증여금액 1억원, 제3자 명의신탁이면 증여공제액 없음 ② 증여세금은 1억원까지×10% = 1천만원임 ③ 평가액이 1억초과 5억까지는 20%, 5억초과 10억까지는 30%,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%, 30억 초과액은 50%임
결론	명의신탁 주식기준금액이 소액인 경우 명의신탁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①, 10년간 가산세를 계산해도 증여기준금액이 원래 적어 총 세금은 적음. 현재주식평가액이 증여세율 10% 구간인 1억원 내외이면 현재의 증여방법 ③도 큰 부담이 아님		